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894
----------	------

제출연월일 : 2020. 7. 14.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 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신고한”을 “신고를 수리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신고한”을 “신고를 수리한”으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정하여”를 “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으로,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5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을 “제5조제5항·제7항,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호 중 “제5조제2항·제6항”을 “제5조제2항·제7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제9항”으로 한다.

제73조제3항제3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

항·제5항·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제6항·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② (생략)

<신 설>

-----.

⑧ -----

----- 제7항-----

신고를 수리한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6조(허가의 기준) ① -----

----- 제7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생략)

<신설>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 신고를 수리한  
-----  
-----.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

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  
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  
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  
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  
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  
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  
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액화석  
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  
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  
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  
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  
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  
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25조(공급규정) ① -----  
-----  
-----  
----- 정하려  
는 경우에는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② (생략)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5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① ~ ③ (생략)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  
-----  
-----  
-----  
-----  
-----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4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5조제5항·제7항, 제8조제4항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상세기준) ① -----  
-----  
-----



②·③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제6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 18. (생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 8. (생략)

제7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  
-----  
-----.

1. 제5조제2항·제7항 -----  
-----  
-----  
-----  
-----  
-----

2. ~ 18.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9항-----  
-----  
-----

3. ~ 8.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p>1. · 2. (생략)</p> <p>3. <u>제12조제3항에</u>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 19. (생략)</p> <p>④ ~ ⑥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u>의 규정</u>-----</p> <p>4. ~ 19.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